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협의처리 (지자체용)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목 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업무영역 및 배정방식 변경
- 공공건물의 범위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협의 처리절차
- 무료검토 대상 안내
- 수수료 산정방법 안내
-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 협의처리(지자체용)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관련 전문기관(검토기관)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및 보완을 의뢰하는 경우,
- 건축주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검토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행정기관에 회신하며,
-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건축허가를 결정**

⇨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최초 허가 신청일이 '13.10.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함)

⇨ **검토기준**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공공기관 74점) 이상 취득을 검토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 에너지성능지표

⇨ **처리절차**

인허가 신청	⇨	허가 접수 및 검토 요청	⇨	검토자 배정	⇨	수수료 납부 요청	⇨	수수료 납부	⇨	검토 후 결과 회신
민원인 (세움터)		지자체 (세움터)		검토기관* (협의시스템)		검토기관* (납부시스템)		민원인 (납부시스템)		검토기관* (협의시스템)

* 검토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제출 예외대상

▶ 「녹조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3호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 식물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출예외대상	냉난방설비 설치여부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 합계	제출 여부
① 단독주택	관계없음		×
② 동 · 식물원	관계없음		×
③ 그 밖의 예외대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	500㎡이상	○
	○	500㎡미만	×
	×	관계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 설계기준 제3조2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 계산방법

설계기준 제3조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영역 및 배정방식 변경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영역 및 배정방식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15.3.16~)
○ 에너지관리공단	○ 행정기관별로 할당된 기관이 전담	○ **전국 공공건물* 전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전국 민간건물 자율경쟁** (행정기관에서 검토기관 선택)

* 단, **교육청 협의 건** 중 자체허가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전담**(국토교통부 지침)

공공건물의 범위

공공건물?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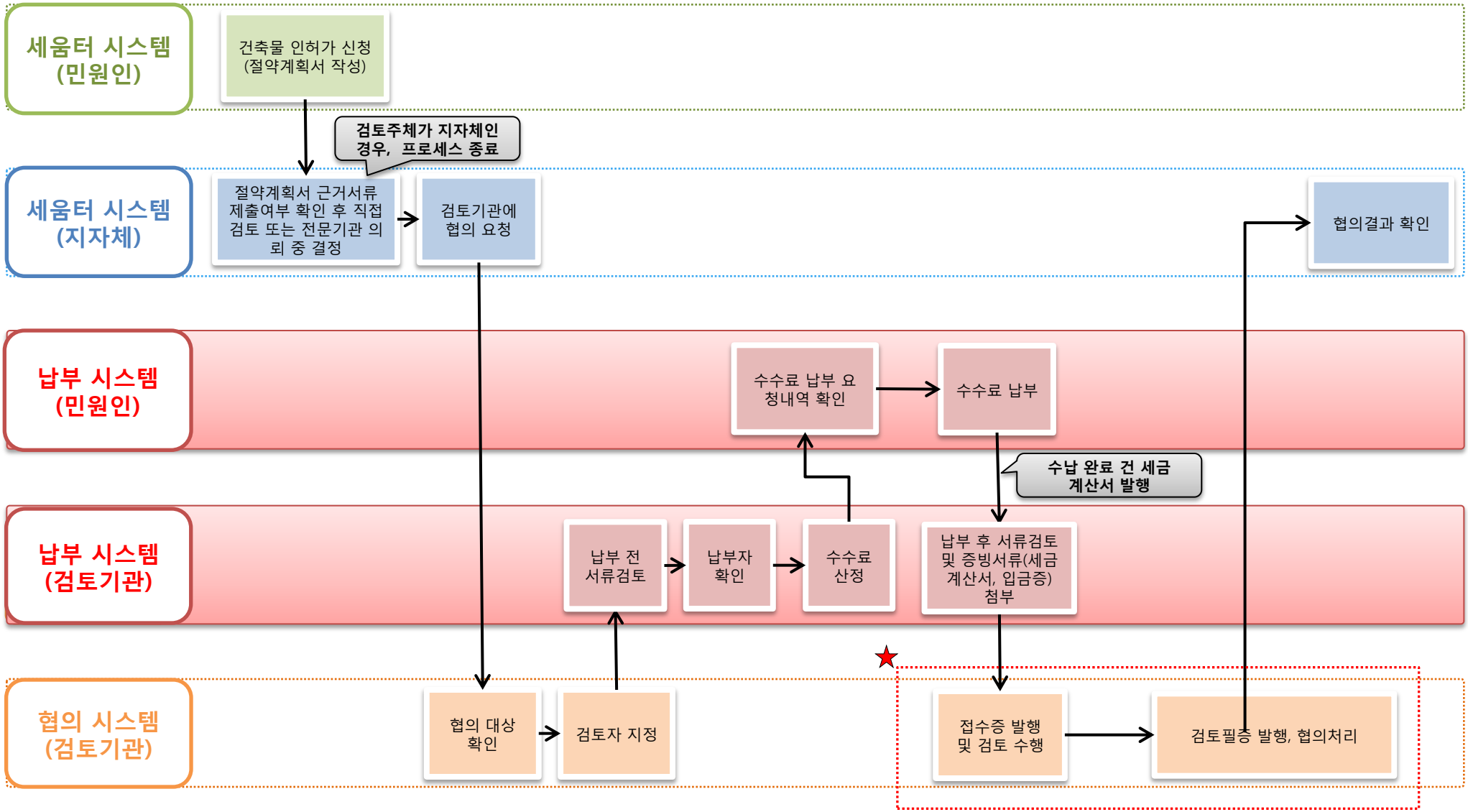
구 분	해당 기관
○ 중앙행정기관	○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 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e) 포함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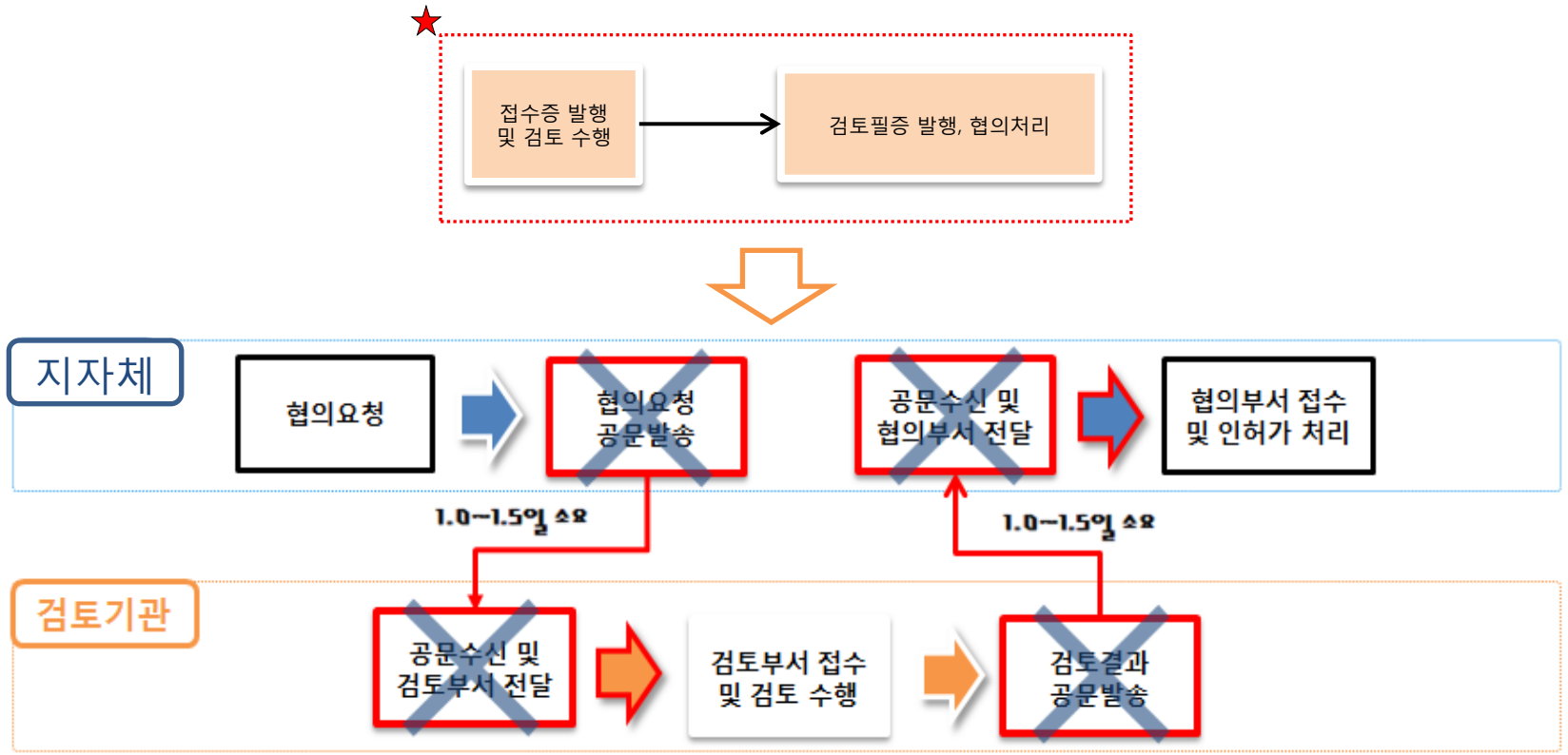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협의 처리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협의 처리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협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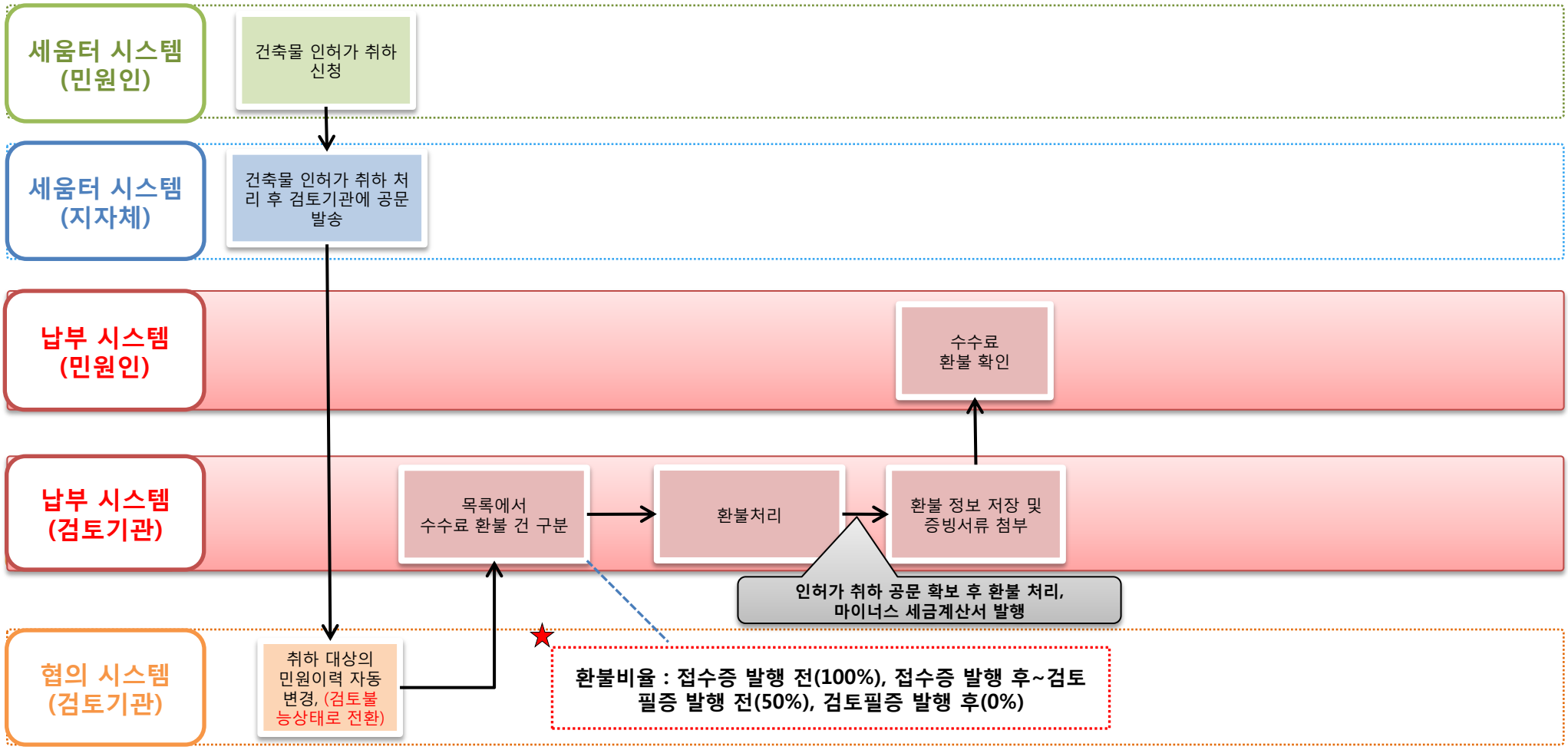
⇨ 행정 처리절차 개선



- 기존의 공문서 수발 절차를 검토시스템 내 접수증 및 검토필증 발급으로 대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협의 처리절차

⇨ 검토수수료 환불 처리절차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무료검토 대상 안내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무료검토 대상 안내(향후 시스템 추가 개편 시 대상 변경 가능)

⇨ 자체 허가권자 협의 건 중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국방부, 교육청, 자유구역청 등 자체 허가권자 협의 건 중 세움터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확인사항 : 세움터 시스템을 통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법령 또는 공문 등)
- 처리방법 : 공문서 수발을 통하여 검토의뢰 및 검토결과 회신 업무를 처리하며, 검토는 오프라인 서류로 진행

⇨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설계변경) 협의 건

-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소유 건축물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협의 건
- 확인사항 : 건축주가 소유 건축물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했을 당시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대상이었음을 증빙하는 서류(행정기관의 허가결과 +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전문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결과 공문 등)
- 처리방법

 1. (세움터 시스템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서식이 없는 경우) 공문서 수발을 통하여 검토의뢰 및 검토결과 회신 업무를 처리하며, 검토는 오프라인 서류로 진행
 2. (세움터 시스템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서식이 있는 경우) 접수증/검토필증으로 검토의뢰 및 검토결과 회신 업무를 처리하며, 검토는 세움터 온라인검토시스템에서 진행

★ 예외대상(설계기준 제2013-587호 제3조제2항제4호 관련) : 단,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며, 해당 면적이 500㎡ 이상이면 유료대상임 ➔ 건축물 최초 허가 신청일이 '13.10.1일 이후 경우에 한함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수수료 산정방법 안내

수수료 산정방법 안내

⇨ 시행규칙 별표의 1. 일반기준(수수료 산정기준)

ㅇ 수수료 산정 시 50% 감면대상

1) 법 제17조에 따라 3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수수료 산정방법 안내

⇨ 시행규칙 별표의 1. 일반기준(수수료 산정기준)

○ 2개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1)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출대상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2) 아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 ×0.1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수수료 산정방법 안내

⇨ 시행규칙 별표의 2. 개별기준(용도별 수수료 테이블)

가. 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14,000

나. 비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60,000 이상	2,537,000

수수료 산정방법 안내

⇨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단일 건인 경우

①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연면적 합계 산정
② ①의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의 2.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 구간 선택
③ 해당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시행규칙 별표의 1. 일반기준에 따른 50% 감면대상인 경우 ②에서 선택한 수수료에 50% 적용하고,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②에서 선택한 수수료 그대로 적용
④ ③의 결과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실제 납부금액 도출

⇨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다수의 건인 경우

①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연면적 합계 산정
② ①의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의 2.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 구간 선택
③ 용도별 에너지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수수료 = 선택한 수수료*(1 + 절약계획서 총 건수 * 0.2)
④ ③에서의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에 시행규칙 별표의 1. 일반기준에 따른 가)50% 감면대상이 존재하거나 나)같은 대지 안에 용도별로 구분한 제출대상면적이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에 추가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수수료 = 선택한 수수료 * (1 +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절약계획서 총 건수 * 0.1 +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절약계획서 건수 * 0.2)
⑤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
⑥ ⑤의 결과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실제 납부금액 도출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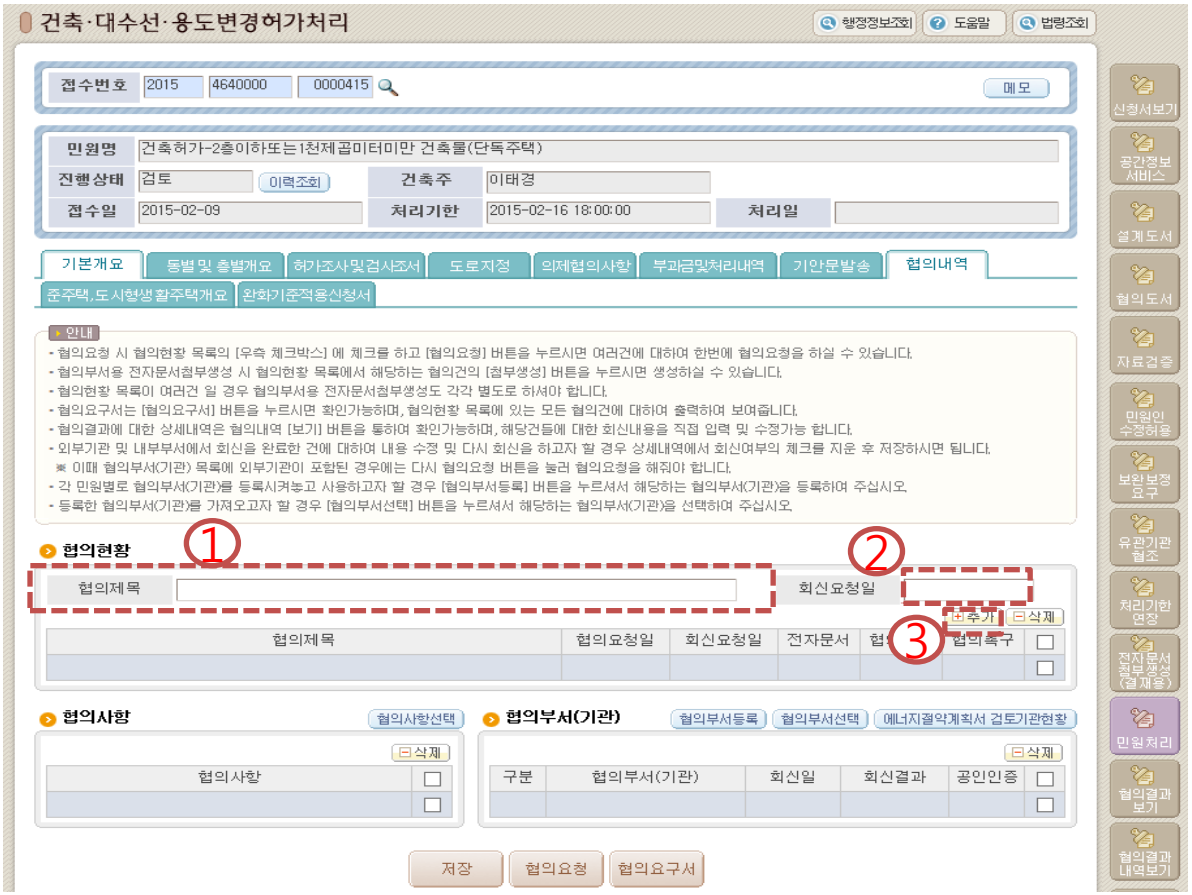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 협의처리 (지자체용)

협의사항 선택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협의사항 추가



ㅇ 화면개요

- [세움터] 협의사항 선택

ㅇ 업무절차

① 협의제목 선택

② 회신요청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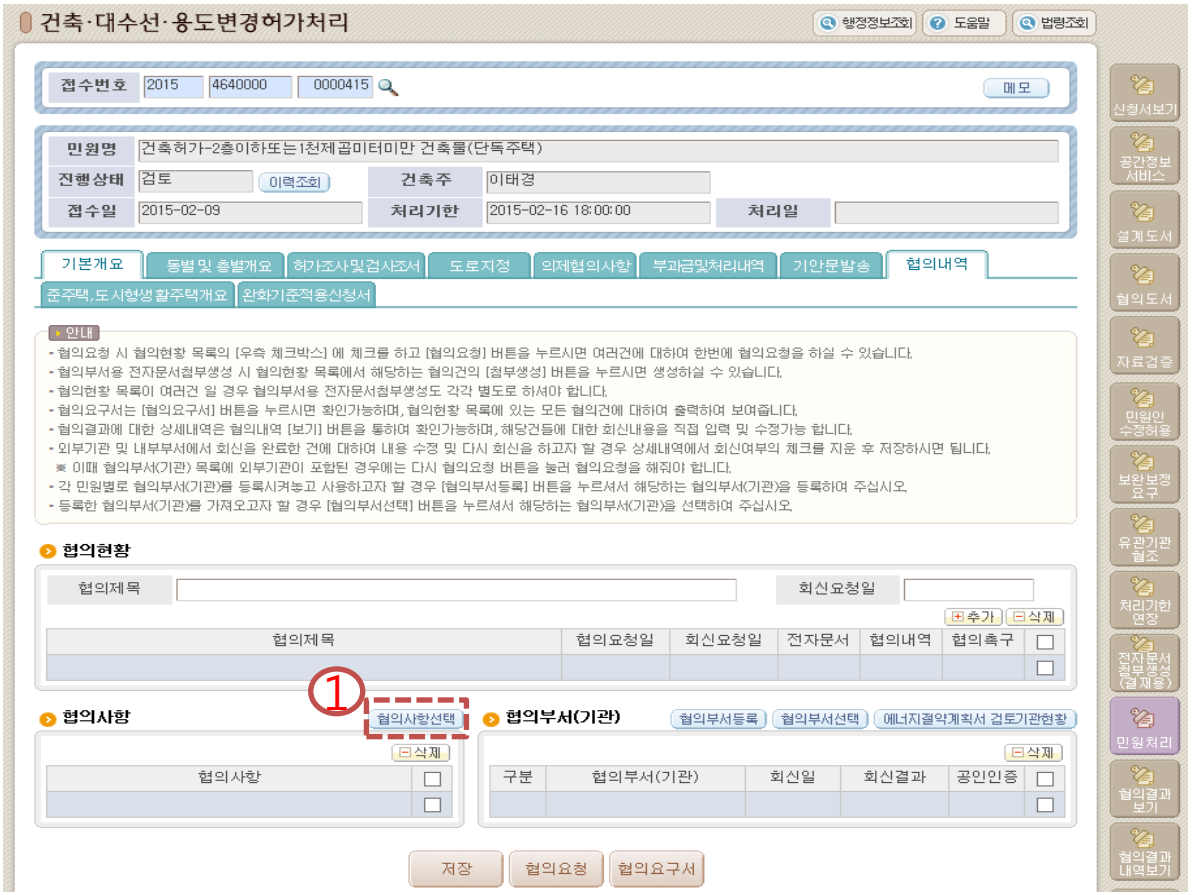
③ 협의사항 추가

협의사항 선택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협의사항 선택



ㅇ 화면개요

- [세움터] 협의사항 선택

ㅇ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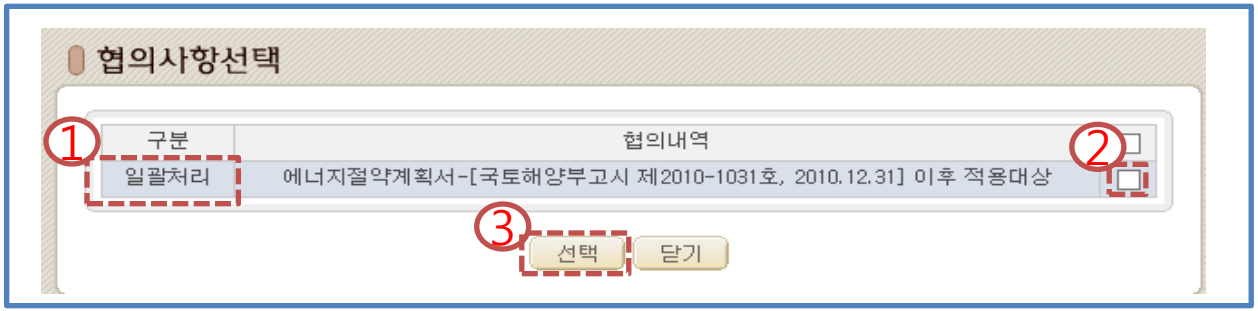
① **[협의사항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협의를 보내고자 하는 사항 선택화면 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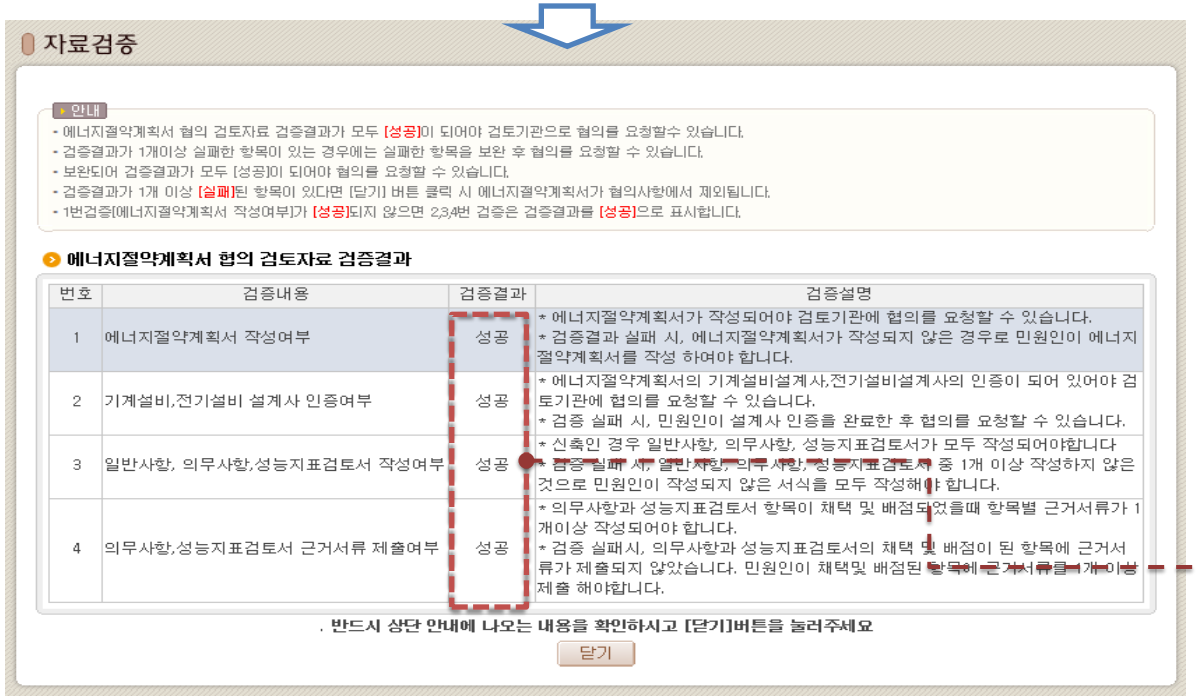
협의사항 선택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협의사항 선택(세부)





○ 화면개요

- [세움터] 협의사항 선택

○ 업무절차

① 일괄처리 내용 확인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체크박스 체크

③ [선택]을 클릭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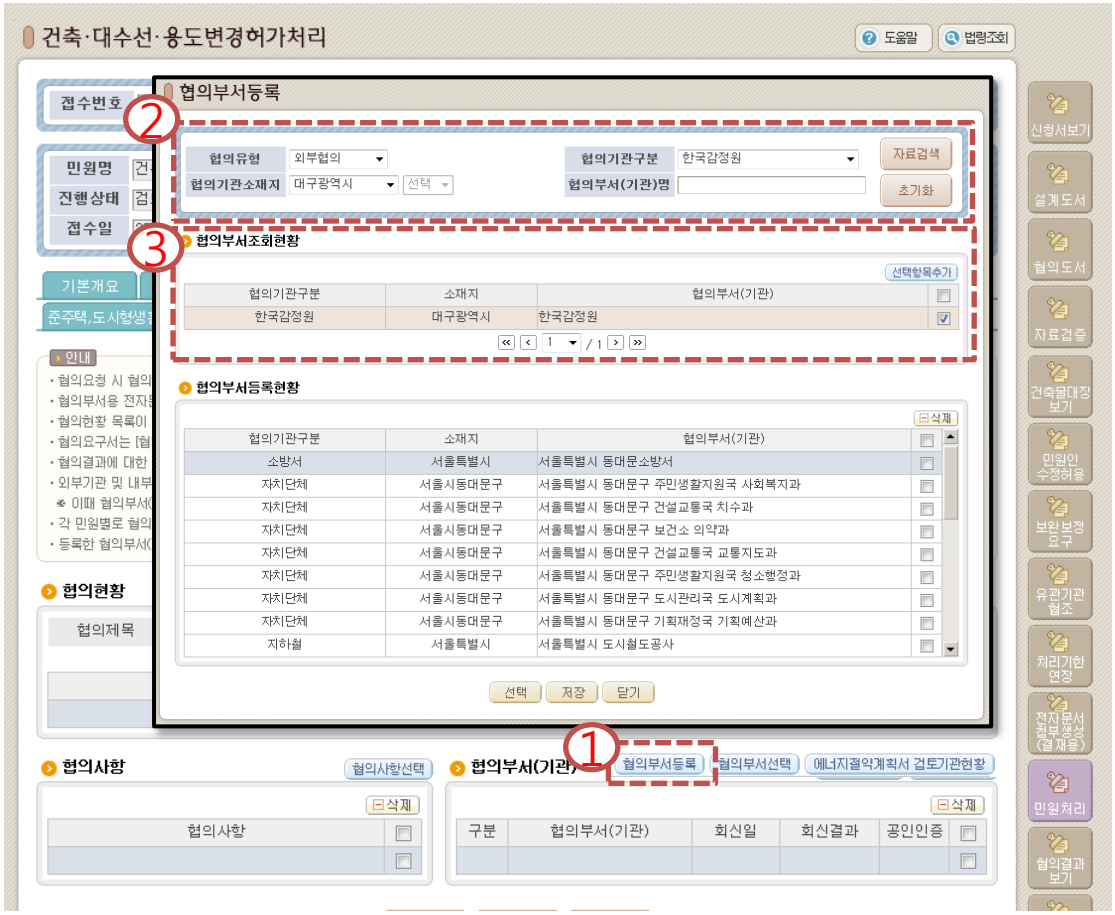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자료 검증결과가 모두 [성공]이 되어야 검토기관으로 협의 요청 가능

협의기관 선택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협의부서 등록



① **[협의부서등록]**버튼을 클릭하여 협의부서 등록화면 호출

② 협의 유형 – 외부협의 선택 ➔ 협의기관구분 – 검토기관 선택 ➔ 협의기관소재지 선택후 자료검색 클릭

③ 조회되는 검토기관을 확인, 우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선택항목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기관 등록

참고

✓ 최초 등록 후 재등록 필요 없이 '협의부서선택' 화면 에서 협의부서 선택

협의기관 선택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기관 현황 조회



- **화면개요**

- [세움터] 검토기관 현황 조회

- **내 용**

검토기관 현황을 안내해줌으로써 신속한 검토처리가 가능한 기관 파악 시 참고

- **업무절차**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현황 클릭

참고

상단에 위치한 검토기관일수록
신속한 검토처리가 가능할 수 있음

협의기관 선택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기관 현황 조회(세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현황

조회일시 : 2015년03월12일(20:14:49)

전국 민간건물(5개 전문 검토기관 자율경쟁)

※상단에 위치한 검토기관일수록 신속한 검[illegible]의 가능성이 [illegible].

검토기관명	① 검토자수	② 접수건수	③ 완료건수	④ 검토중수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32	1	1	0
한국시설안전공단	21	3	2	1
한국감정원	26	8	1	7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18	0	0	0
한국환경건축연구원	13	4	2	2

전국 공공건물(에너지관리공단 전담-12개 지역본부 분할검토)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명	관할지역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명	관할지역
강원 지역본부	강원도	광주전남 지역본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기 지역본부	경기도	전북 지역본부	전라북도
경남 지역본부	경상남도	대전충남 지역본부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세종특별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충북 지역본부	충청북도
서울 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부산울산 지역본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인천 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제주 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 화면개요

- [세움터] 검토기관 검토현황 화면

○ 내 용

검토기관별 검토 현황이 실시간 업데이트되며, 검토기관별 검토자수 대비 검토중인 건수가 적은 기관이 상부에 배치

① 검토자수 : 검토기관별 검토자수

② 접수건수 : 접수증 발행 건수

③ 완료건수 : 검토필증 발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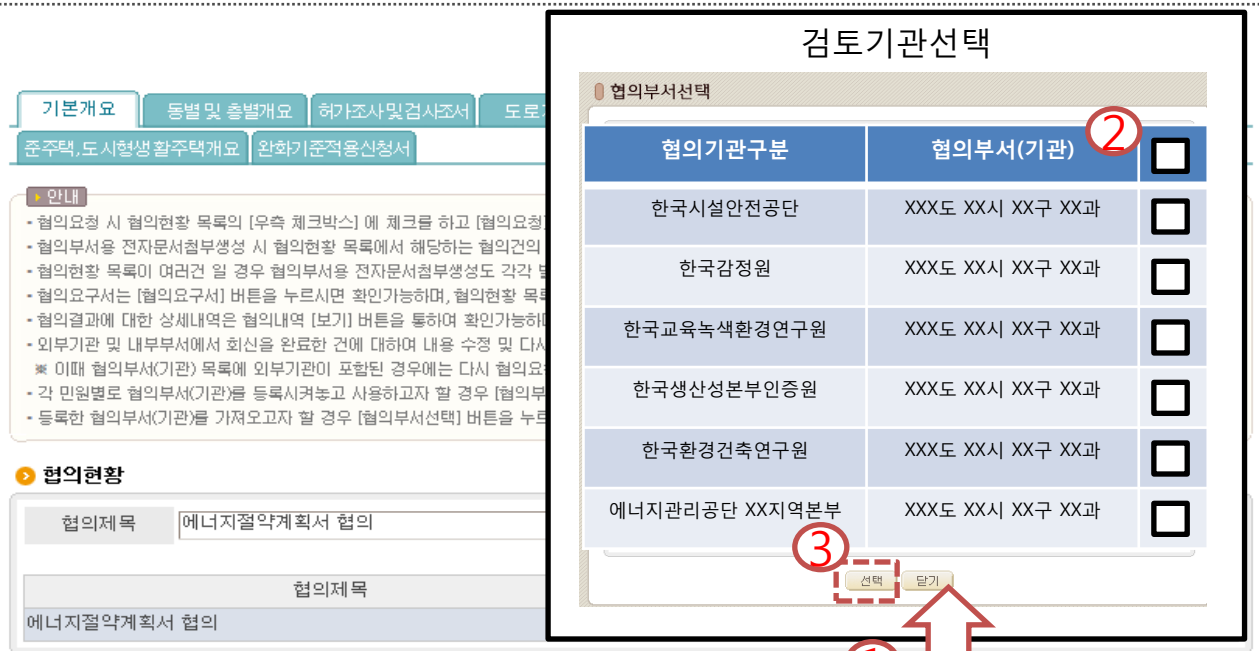
④ 검토중수 : 검토기관이 검토진행중인 건수

협의기관 선택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협의부서 선택



○ 화면개요

- [세움터] 협의부서 선택화면

○ 업무절차

① 협의부서 선택 클릭

② 절약계획서 검토기관현황 조회를 통해 협의기관으로 결정한 검토기관 선택

③ “선택” 클릭

협의요청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협의 요청



○ 화면개요

- [세움터] 협의 요청

○ 업무절차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사항 체크

② 협의요청 클릭

③ 협의요청일에 클릭한 일자 표기

④ 저장

[검토기관] 협의처리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기관-관리자] 검토자 지정



○ 화면개요

-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 검토자 지정

○ 업무절차

①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담당자 미지정 민원 체크

② 조회버튼 클릭

② 조회되는 리스트 중 미지정 건 선택

③ 검토기관 내 담당자 지정

(검토기관) 협의처리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기관-검토자]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 요청 목록 확인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



검토수수료 납부 시스템



ㅇ 화면개요

- 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목록

ㅇ주요내용

- 사이버통합시스템에서 검토자 지정 시 수수료 납부시스템으로 해당 협의 건에 대한 주요정보가 전송됨

- 전송정보
 - 협의요청기관 (협의대상기관)
 - 협의요청일(회신요청일)
 - 대지위치
 - 건축주(접수번호)
 -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 진행사항
 - 협의처리일
 - 민원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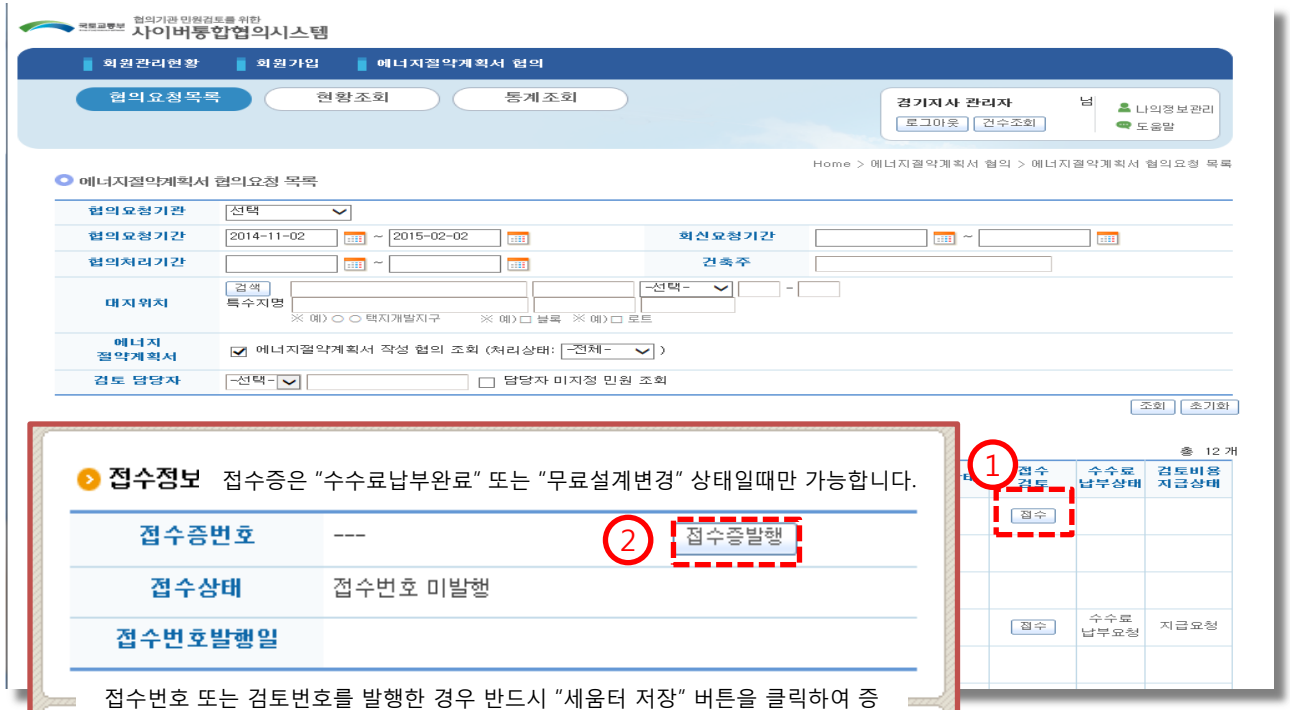
*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검토수수료납부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동일한 협의 목록 보유

[검토기관] 협의처리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기관-검토자] 접수증 발급



접수증 발행버튼을 클릭하면 "검토수수료납부시스템으로 접수 관련 정보가 전송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Yes or No" 메시지 팝업 생성

○ 화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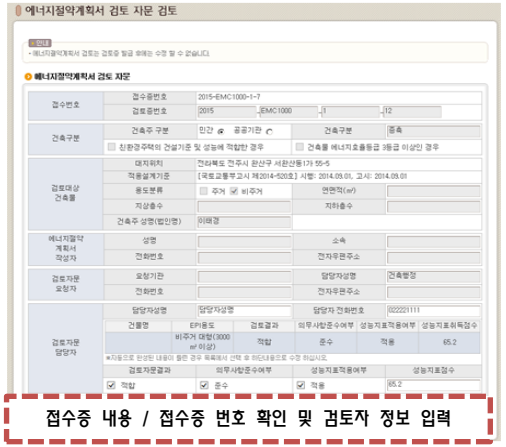
-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 접수증 발급

○ 업무절차

① 접수버튼 클릭
② 접수증 발행

- 접수번호 및 검토자 정보 기재 후 저장

<접수증>



접수증 내용 / 접수증 번호 확인 및 검토자 정보 입력

검토자 정보 입력은 필수기재 사항이며
검토자 입력 후 저장 시 접수증 발행, 이후 수정불가!

[검토기관] 협의처리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기관-검토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화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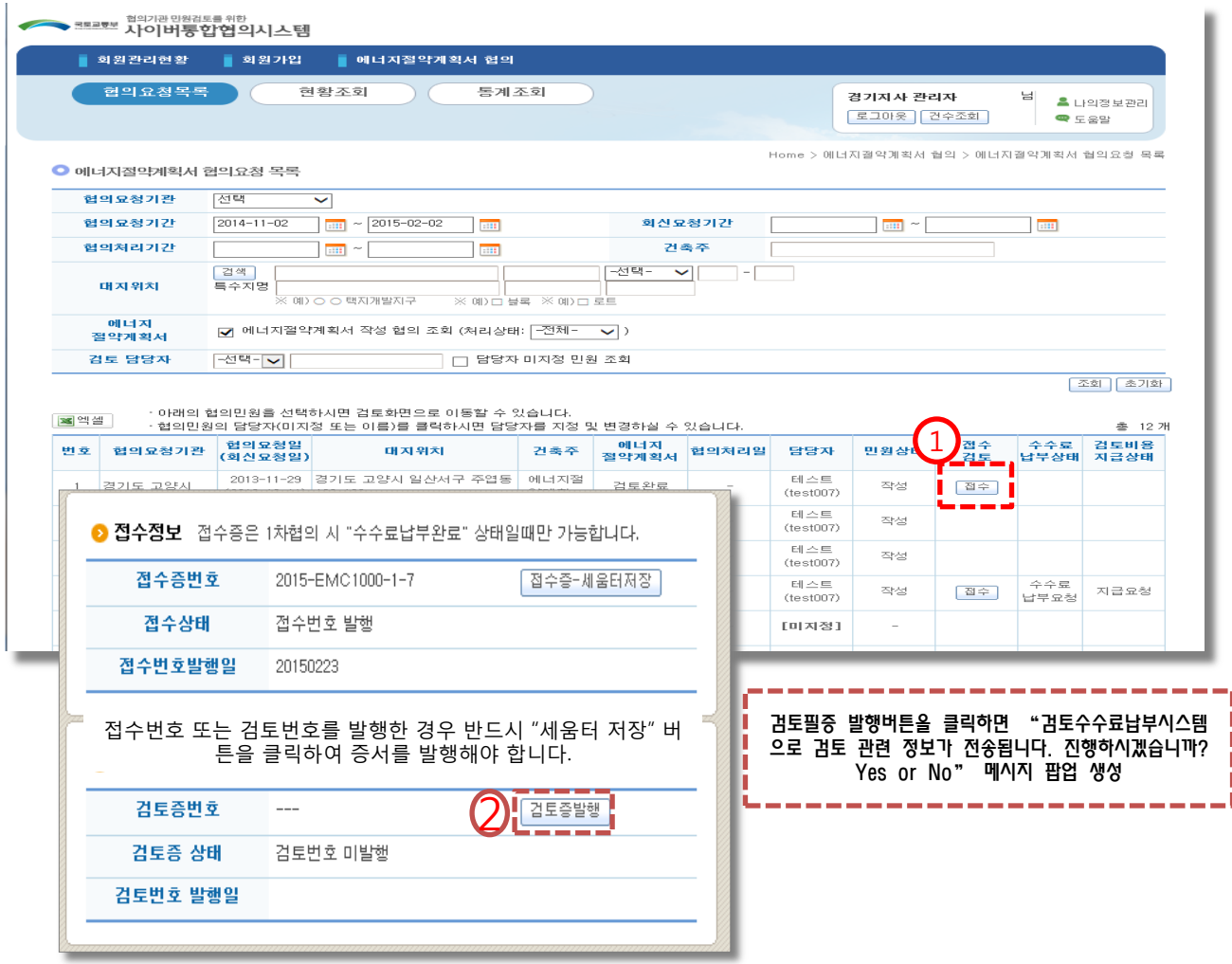
- [세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검토기관] 협의처리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기관-검토자] 검토필증 발급



검토필증 발행버튼을 클릭하면 "검토수수료납부시스템으로 검토 관련 정보가 전송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Yes or No" 메시지 팝업 생성

○ 화면개요

-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 검토필증 발급 화면

○ 업무절차

① 접수버튼 클릭
② 검토필증 발행

- 접수번호 및 검토자 정보확인 후 저장

<검토필증>



검토필증 내용 / 검토필증 번호 확인 후 검토자 정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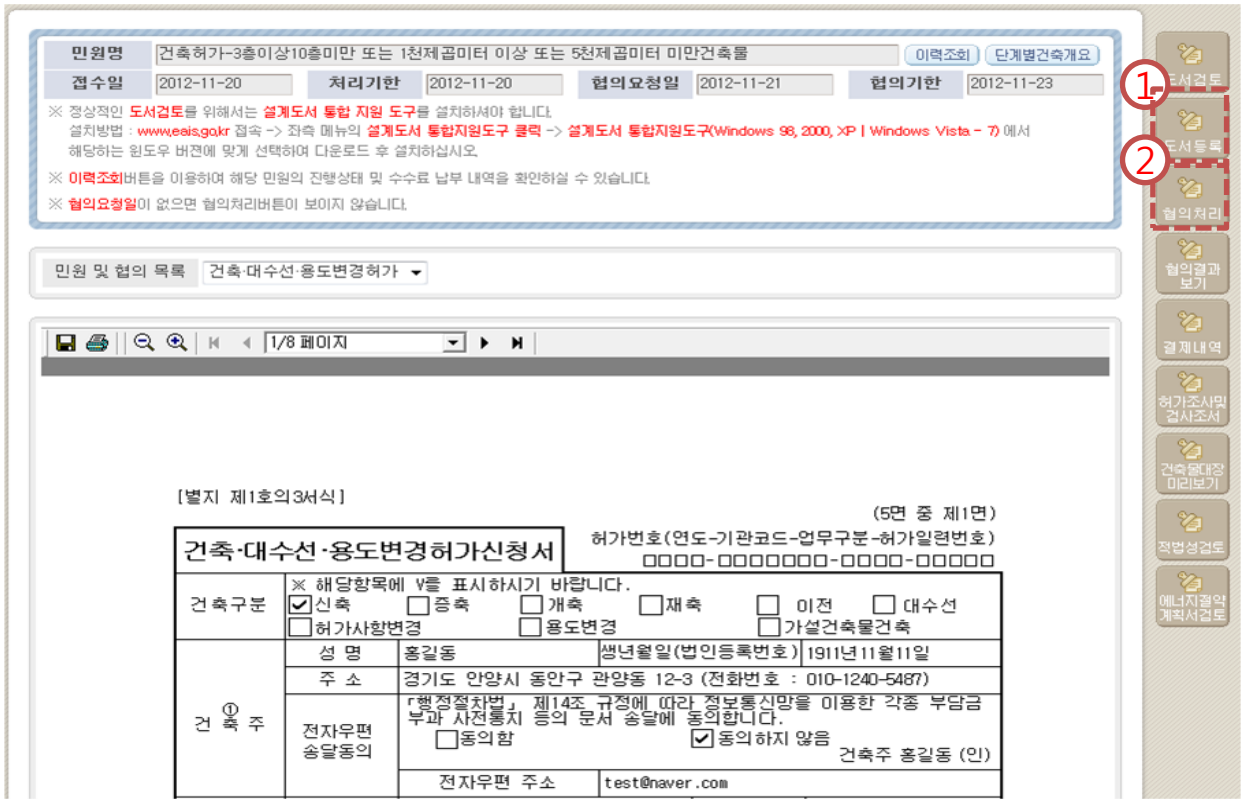
검토자 정보 입력은 필수기재 사항이며,
검토자 입력 후 저장 시 검토필증 발행, 이후 수정불가!

[검토기관] 협의처리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기관-검토자] 협의 처리



○ 화면개요

- [세움터] 협의처리

○ 업무절차

① 도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공문 등의 파일첨부가 필요한 경우 첨부

② 첨부파일 등록 완료 후 협의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협의처리 진행

결과 확인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접수증 확인



○ 화면개요

- [세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접수증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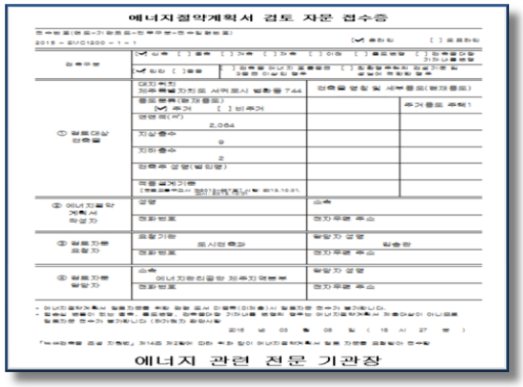
○ 업무절차

① **의제협의사항** 내역 조회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현황 **보기** 클릭

③ **접수증 조회** 클릭

<접수증>



결과 확인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접수증 확인

에너지절약계획서출력

에너지절약계획서출력 (※ 해당 자료를 더블클릭하시면 에너지절약 계획서가 출력되고, 검토결과서는 목록안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완료일	검토필증
2015-EMC1000-1-5	2015-02-09	조회
2015-EMC1000-1-6	2015-02-09	

1/1 페이지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자문 접수증

접수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접수일련번호)

2015 - EMC1000 - 1 - 5 ☑ 온라인 [] 오프라인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 민간 [] 공공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 이상인 경우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	
	대지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건축물 명칭 및 세부용도(현재용도)	
	용도분류(현재용도) [] 주거 ☑ 비주거	test2-1	비주거 대형(3000㎡ 이상)

ㅇ 화면개요

- [세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접수증 조회

ㅇ 업무절차

- 검토기관에서 접수증 발행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의 접수증 화면 생성

① 접수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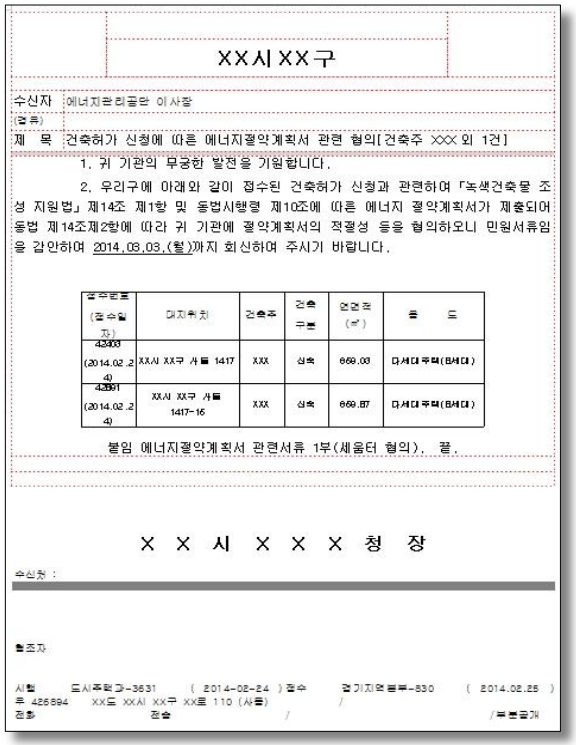
결과 확인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접수증 확인

<검토 협의요청 공문>



XX시 XX구

수신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유)
제 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협의[건축주 XXX 외 1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에 아래와 같이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에 절약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협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14.03.0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구분	연면적(㎡)	용도
42403 (2014.02.24)	XX시 XX구 사동 1417	XXX	신축	669.03	다세대주택(B세대)
42391 (2014.02.24)	XX시 XX구 사동 1417-16	XXX	신축	669.87	다세대주택(B세대)

붙임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서류 1부(세움터 협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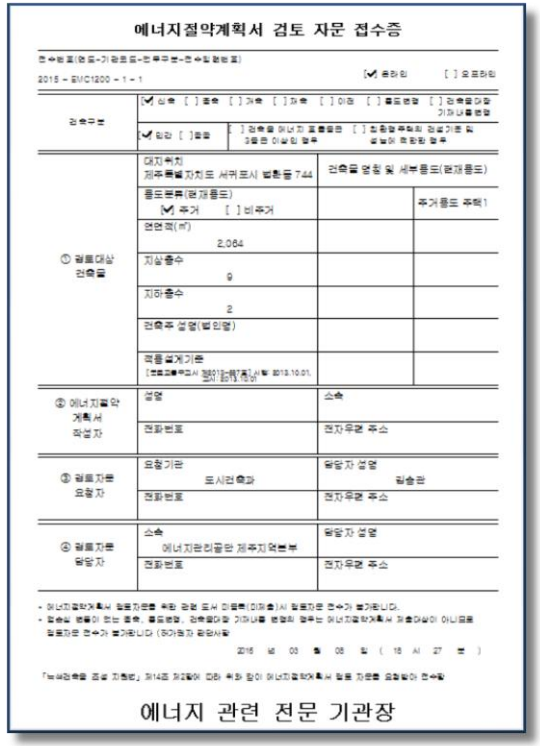
X X 시 X X X 청 장

수신처 :

협조자

시행 도시주택과-3631 (2014-02-24)접수 경기지역본부-630 (2014.02.25)
우 426894 XX도 XX시 XX구 XX로 110 (사동) /
전화 전송 / /부분공개

<접수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자문 접수증

2015 - SVC1200 - 1 - 1 ☑ 온라인 [] 오프라인

건축구분	☑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 허가 []협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한 법률	
① 검토대상 건축물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744	건축물 명칭 및 세부용도(변재용도)	
	용도분류(변재용도) ☑ 주거 [] 비주거		주거용도 주택1
	연면적(㎡) 2,064		
	지상층수 9		
	지하층수 2		
	건축주 성명(법인명)		
	적용설계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2013.10.01. 이후 건축허가신청)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검토자문 요청자	요청기관 도시건축과	담당자 성명 김승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검토자문 담당자	소속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본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자문을 위한 관련 도서 미첨부(미제출)시 검토자문 진수가 보류됩니다.
• 접수일 변동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검토자문 진수가 보류됩니다 (5다항과 관련사항)

2015 년 03 월 05 일 (15 시 27 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귀하 앞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자문을 요청합니다 진수합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장

○ 화면개요

- [세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접수증 조회

○ 내 용

- 기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협의요청 공문을 접수증으로 대체

결과 확인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필증 확인

에너지절약계획서출력

에너지절약계획서출력 (※ 해당 자료를 더블클릭하시면 에너지절약 계획서가 출력되고, 검토결과서는 목록안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완료일	검토필증
2015-EMC1000-1-5	2015-02-09	조회
2015-EMC1000-1-6	2015-02-09	

① 조회버튼 클릭

1/1 페이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자문 접수증

접수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접수일련번호)

2015 - EMC1000 - 1 - 5

[✓] 온라인 [] 오프라인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 민간 [] 공공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 이상인 경우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	
	대지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건축물 명칭 및 세부용도(현재용도)	
	용도분류(현재용도) [] 주거 [✓] 비주거	test2-1	비주거 대형(3000㎡ 이상)

○ 화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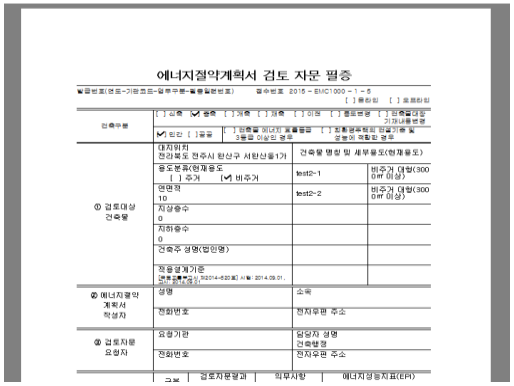
- [세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필증 조회

○ 업무절차

- 검토기관에서 검토필증 발행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의 검토필증 조회버튼 생성

① 검토필증 조회버튼 클릭

<검토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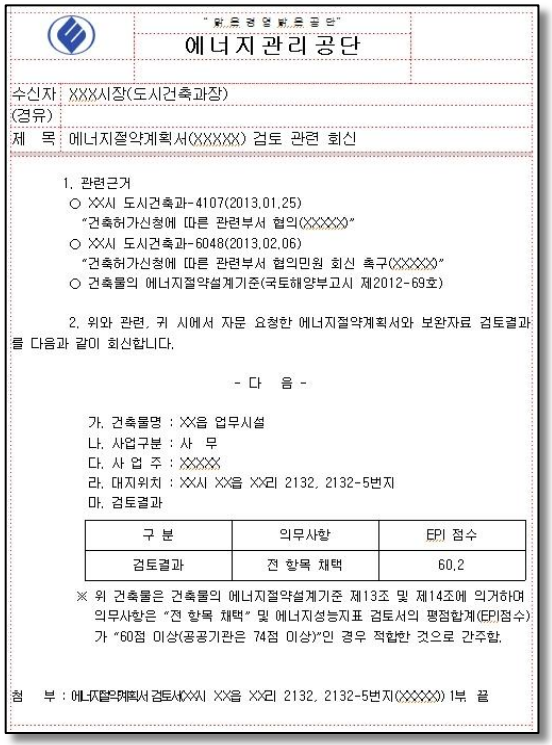
결과 확인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검토필증 확인

<검토결과 회신공문>



에너지관리공단

수신자 XXX시장(도시건축과장)
(경유)
제 목 에너지절약계획서(XXXXX) 검토 관련 회신

1. 관련근거
○ XX시 도시건축과-4107(2013.01.25)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XXXXX)"
○ XX시 도시건축과-6048(2013.02.06)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민원 회신 촉구(XXXXX)"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9호)

2. 위와 관련, 귀 시에서 자문 요청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보완자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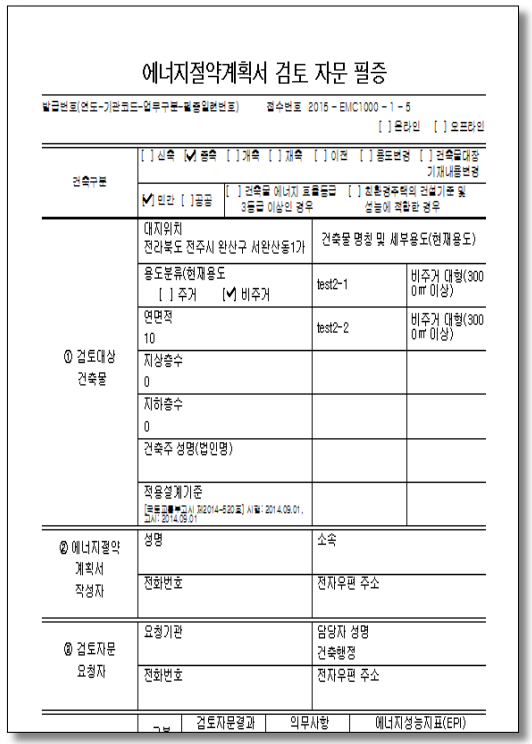
가. 건축물명 : XX읍 업무시설
나. 사업구분 : 사 무
다. 사 업 주 : XXXXX
라. 대지위치 : XX시 XX읍 XX리 2132, 2132-5번지
마. 검토결과

구 분	의무사항	EPI 점수
검토결과	전 항목 채택	60.2

※ 위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EPI점수)가 "60점 이상(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함.

첨 부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서(XX시 XX읍 XX리 2132, 2132-5번지(XXXXX)) 1부. 끝

<검토필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자문 필증

발급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발급일련번호) 접수번호 2015-EMC1000-1-5
[] 온라인 [] 오프라인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 민간 [] 공공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 이상인 경우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
① 검토대상 건축물	대지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건축물 명칭 및 세부용도(현재용도)	
	용도분류(현재용도) [] 주거 [✓] 비주거	test2-1	비주거 대형(3000㎡ 이상)
	연면적 10	test2-2	비주거 대형(3000㎡ 이상)
	지상층수 0		
	지하층수 0		
	건축주 성명(법인명)		
	적용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20호] 시행: 2014.09.01, 고시: 2014.09.01		
②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검토자문 요청자	요청기관	담당자 성명 건축행정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검토자문결과	의무사항	에너지성능지표(EPI)

○ 화면개요

- [세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필증 조회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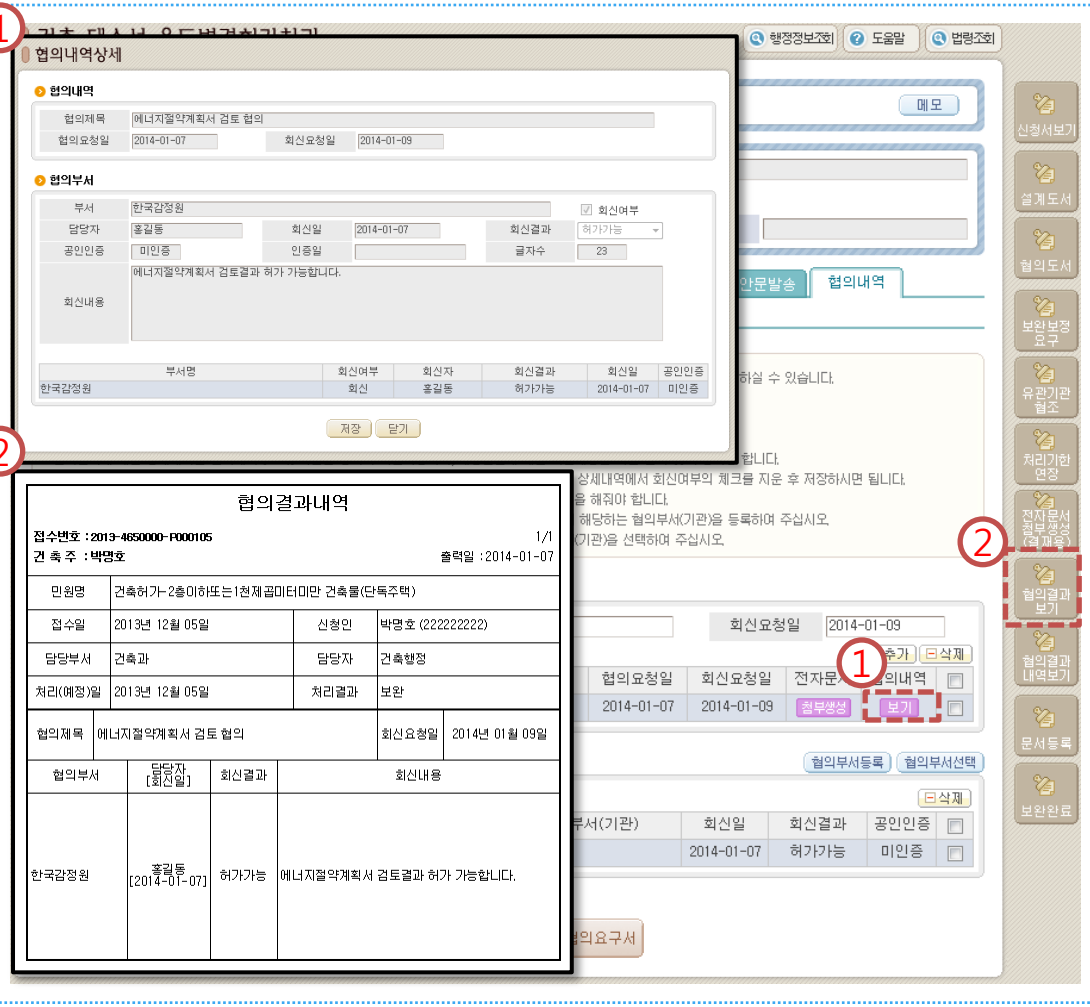
- 기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결과 회신공문을 검토필증으로 대체

결과 확인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사항 선택 → 협의기관 선택 → 협의 요청 → (검토기관)협의 처리 → **결과확인**

→ 협의결과확인



- **화면개요**

- [세움터] 협의결과확인

- **업무절차**

① 협의 항목의 협의내역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협의내역 상세화면을 조회

② [협의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협의내역 정보 조회 및 출력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감사합니다